

3.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 결정 방법은?

→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**필지별 감정평가금액**(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 고려)으로 결정

4.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방법은?

→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은 **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부터 매월 15일에 지급**(15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)하며,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

5. 종전 경영이양직불 임대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자로 전환한 경우 지급 기간과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?

→ 농지이양은퇴직불은 경영이양직불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**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**. 아울러 남은 기간만큼은 **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 단가로 변경하여** 지급받을 수 있음

6.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체결 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→ **신청할 수 없음**. 다만,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체결 당시 계속 경작을 허용 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**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,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 이양은퇴보조금을 차감함**

7.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나요?

→ **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** 경우에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나, **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함**

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 연락처

본부명	지사명	사무실 연락처
경기 지역 본부	여주·이천	031-887-7508
	양평·광주·서울	031-770-8015
	화성·수원	031-240-4843
	연천·포천·가평	031-860-8922
	파주	031-950-3234
	고양	031-929-9411
	강화·용진	032-930-2526
	김포	031-980-8107
	평택	031-680-5669
	안성	031-678-3523
	홍천·춘천	033-430-9513
	원주	033-749-1609
	강릉	033-650-3217
	영북	033-630-0113
강원 지역 본부	철원	033-450-1332
	청주	043-290-0511
	보은	043-540-2523
	옥천·영동	043-730-2515
	진천	043-530-5709
	괴산·증평	043-830-5117
	음성	043-871-7323
	충주·제천·단양	043-841-3024
	천안	041-539-7092
	공주	041-850-6433
충북 지역 본부	보령	041-930-7843
	아산	041-539-7133
	서산·태안	041-660-8532
	논산	041-730-2124
	세종·대전·금산	044-860-3310
	부여	041-837-9529
	서천	041-950-7707
	청양	041-940-1732
	홍성	041-630-5753
	예산	041-330-3533
	당진	041-351-9157
	남원	063-620-2014
	순창	063-650-7030
	동진	063-540-1186
충남 지역 본부	부안	063-580-1013
	군산	063-440-5615
	익산	063-860-0033
	전주·완주·임실	063-270-0522
	고창	063-560-1556
	정읍	063-530-0322
	무진장	063-350-7033

본부명	지사명	사무실 연락처	
전남 지역 본부	광주	062-380-8624	
	순천·광양·여수	061-740-1133	
	나주	061-330-9522	
	담양	061-380-4112	
	곡성	061-360-1121	
	구례	061-780-3120	
	고흥	061-830-2231	
	보성	061-850-2523	
	화순	061-370-8517	
	장흥	061-860-7616	
	강진	061-430-7725	
	해남·완도	061-530-1513	
	영암	061-470-5537	
	목포·무안·신안	061-260-5521	
	함평	061-320-5214	
	영광	061-350-6532	
	장성	061-390-8636	
	진도	061-540-5421	
	경북 지역 본부	포항·울릉	054-720-7006
		경주	054-778-1023
안동		054-850-5725	
구미·김천		054-712-3470	
영주·봉화		054-639-5022	
영천		054-339-5005	
상주		054-531-3615	
문경		054-550-5313	
경산·청도		053-819-6012	
의성·군위		054-830-8124	
청송·영양		054-870-0513	
영덕·울진		054-730-5013	
고령		054-950-0721	
성주		054-930-0700	
칠곡		054-800-5000	
예천		054-650-7123	
달성		053-610-3821	
경남 지역 본부		김해·양산·부산	055-320-4834
		고성·통영·거제	055-670-7003
		울산	055-290-5300
	진주·산청	055-760-2532	
	의령	055-570-6010	
	함안	055-580-0324	
	창녕	055-530-7772	
	밀양	055-359-6308	
	창원	055-250-2243	
	사천	055-851-8122	
	거창·함양	055-940-5513	
	합천	055-930-8263	
	하동·남해	055-880-5122	
	제주지역본부	서귀포지부	064-750-8885

국민과 함께하는 농촌,
힘차게 도약하는 농업

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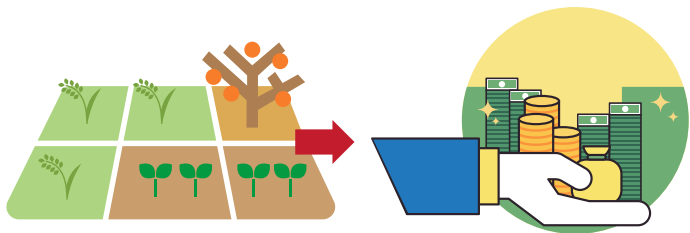
신청 안내



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?

고령 농업인(만 65세~만 84세)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이후의 **생활 안정**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**매도** (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) 이양하는 경우 **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**을 지원(최대 10년) 하는 제도

고령 농업인에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**청년 농업인**에 우선 제공하여 **농업 생산성 향상**과 스마트팜, 그린바이오 등 **미래농업 준비**를 위해 활용 하도록 지원



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대상과 지원 기준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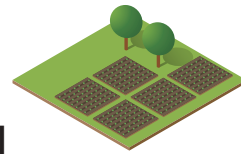
신청 대상 요건



농업인 요건

약정체결 연도 기준 현재 **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** 농업인 중 **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**을 하고 있는 농업인

농지 요건



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**3년 이상**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·밭·과수원

보조금 지급 요건

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(1천제곱미터 미만*)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,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

*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

지원단가*



(매도) 1ha당 매월 50만원,
(매도 조건부 임대) 1ha당 매월 40만원

* 경작 허용 농지가 1,000㎡ 이상 3,000㎡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지원

지급상한 면적



4ha(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)
- 지급한도 : (매도) 월 200만원(4ha 기준),
(매도 조건부 임대) 월 160만원(4ha 기준)

지급 기한

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, 만 84세까지 지원

연령	만 65세 이상 만 75세 이하 (*59~48년생)	만 76세 (*47년)	만 77세 (*46년)	만 78세 (*45년)	만 79세 (*44년)
지급기간	10년	9년	8년	7년	6년
연령	만 80세 (*43년)	만 81세 (*42년)	만 82세 (*41년)	만 83세 (*40년)	만 84세 (*39년)
지급기간	5년	4년	3년	2년	1년

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은?

매도(ha당)

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*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

*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도 포함

지원
혜택

농지이양 은퇴직불금(월 50만원) +
농지 매도대금(공사 매도시) 지급

매도 조건부 임대(ha당)

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

농지이양 은퇴직불금(월 40만원)

+ 은퇴직불형 농지연금(월 300만원, 최대한도)

+ 농지임대료

+ 농지 매도대금(농지연금 채무액 제외)



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대상자 신청 방법은?

신청·접수 기간

2024년(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까지)

신청방법

농지이양 방식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
* 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관할 지사에 문의

문의

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1577-7770,
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

농지이양 은퇴직불 묻고 답하기

1. 이전 연도에 농지이양한 농지도 당해연도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→ 신청할 수 없음.
당해 연도에 농지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

2. 농지이양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란 어떤 농지인가?

→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경작 허용.
다만, 소유농지 중 지급 대상 농지(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)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까지 경작이 가능함